

안산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8-514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0. 11. .
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제안이유

- 무형문화재 보존·전승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, 무형문화재 관련 법령의 제·개정에 따른 조례 정비를 위해 안산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

주요내용

- 안산시 무형문화재의 정의를 안산시 관할에 근거를 둔 지정문화재로 규정함
(안 제2조)
-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,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삭제하고, 비상설화 운영규정을 신설함(안 제4조)
- 무형문화재 전승자의 전승활동 사항을 규정함(안 제11조의2)
-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위원회와 중복된 기능을 하는 발전연구회 관련 조항을 삭제함(안 제12조)
- 무형문화재의 보전·전승을 위한 지원사항을 구체화함(안 제14조)
- 조례 제정 이후 제정된 「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, 「경기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」 등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함
(안 제1조, 제15조)

개정조례안 : 붙임1

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2

관계법령발췌서 : 붙임3

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사항 없음

예산수반사항

-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: 붙임4
- 사전예고(결과) : 의견없음
- 입법예고 : 2020. 10. 8. ~ 2020. 10. 28. (20일간)
- 기타 참고사항
 - 현행조례 : 붙임5
 - 방침결정문 : 붙임6

< 불임 1 >

안산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안산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문화재 보호법」 제36조 및 제73조에 규정에 의하여” 를 “「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”로 한다.

제2조 중 “무형문화재로서 보유단체와 개인을” 을 “무형문화재를”로 한다.

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4조(위원회 설치 및 운영) ① 무형문화재 단체 등에 대한 전통보존과 육성지원을 위하여 안산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-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.
- ④ 위원은 문화재 업무담당 실·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, 그 밖의 위원은 관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
- ⑤ 위원은 위원회를 개최할 때마다 위촉하고, 위원회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촉된 것으로 본다.
-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- ⑦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⑧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- ⑨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4조의2를 삭제한다.

제5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.

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1조의2(무형문화재 보존·전승활동) 무형문화재 전승자는 전통 보존과 전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.

1. 무형문화재 기·예능 공개 및 지역행사 참여
 2. 지역주민과 청소년 등에 대한 전승 및 교육 활동
 3. 전수교재 제작 등 전수기반 마련

제12조를 삭제한다.

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4조(전승지원) 시장은 무형문화재의 보존·전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 무형문화재의 교육, 공연, 전시,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
 2. 무형문화재의 보존·전승에 필요한 시설의 개선 비용
 3. 무형문화재 전승자에 대한 전승활동비 및 특별지원금

제15조 중 “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”를 “경기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과		문화예술과
입 안 자	실·과장 직위·성명	문화예술과장 김정아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문화재관리팀장 조성진
	담당자 성명·전화	강민우 (행정 2796)

< 불임 2 >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문화재 보호법」 제36조 및 제73조에 규정에 의하여 안산시 무형문화재의 전통을 보존하고 세계적 문화유산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안산시 무형문화재” (이하 “무형문화재” 라 한다)라 함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거나 도지사가 향토문화의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문화재 중 안산시 관할에 근거를 둔 무형문화재로서 보유단체와 개인을 말한다.</p> <p>제4조(위원회 설치) 무형문화재 단체 등에 대한 전통보존과 육성지원을 위하여 안산시 무형문화재보존및 지원 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 라 한다)를 둔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「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무형문화재를 ----- -----.</p> <p>제4조(위원회 설치 및 운영) ① 무형문화재 단체 등에 대한 전통보존과 육성지원을 위하여 안산시 무형문화재보존 및 지원 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 라 한다)를 둔다.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.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. ④ 위원은 문화재 업무담당 실·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, 그 밖의 위원은 관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 ⑤ 위원은 위원회를 개최할 때마다 위촉하고, 위원회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촉된</p>

것으로 본다.

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⑦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⑧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
⑨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<삭 제>

제4조의2(위원회의 존속기한)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.

제5조(위원회의 기능) ① (생 략)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되, 정기회는 무형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 심의를 위하여 매년 1회 소집하며,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.

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.

제6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.

③ 위원은 문화재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, 그 밖의 위원은 관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시장

제5조(위원회의 기능) ① (현행과 같음)

<삭 제>

<삭 제>

<삭 제>

이 위촉한다.

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

제7조(위원장 등의 임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무를 통괄한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8조(위원의 해촉)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사망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
2. 6월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
3. 위원의 품위손상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

<신 설>

제12조(발전연구회) 시장은 무형문화재의 전통 보존과 전승을 위해 발전연구회를 둘 수 있으며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<삭 제>

<삭 제>

제11조의2(무형문화재 보존·전승활동)

무형문화재 전승자는 전통 보존과 전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.

1. 무형문화재 기·예능 공개 및 지역행사 참여
2. 지역주민과 청소년 등에 대한 전승 및 교육 활동
3. 전수교재 제작 등 전수기반 마련

<삭 제>

제14조(보조금) 시장은 무형문화재 보존 ·

육성을 위해 필요한 교육, 공연, 전시, 기록관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형문화재 보유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.

제15조(적용) 그 밖에 무형문화재 보조 및 지원에 관한 제반업무와 관련하여 필요 한 사항은 「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」 와 「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.

제14조(전승지원) 시장은 무형문화재의 보

존 · 전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 무형문화재의 교육, 공연, 전시, 관리 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

2. 무형문화재의 보존 · 전승에 필요한 시설의 개선 비용

3. 무형문화재 전승자에 대한 전승활동비 및 특별지원금

제15조(적용) -----

--- 「경기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」 -----
-----.

안산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 안 번 호	8-514
------------	-------

제안년월일 : 2020년 12월 7일
제 안 자 : 문화복지위원회

수정이유

- 안산시 무형문화재보존 및 지원위원회는 심의·자문기구로 위원회 성격에 맞게 조문을 수정함.

주요골자

- “심의·결정”을 “심의”로 수정 (안 제5조제1항)

안산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안산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
수정한다.

안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심의 · 결정” 을 “심의”로 한다.

수정안 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5조(위원회의 기능)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·결정한다.</p> <p>1.~ 5. (생략)</p> <p>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되, 정기회는 무형문화재의 보존 관리 및 활용계획 심의를 위하여 매년 1회 소집하며,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.</p> <p>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 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.</p>	<p>제5조(위원회의 기능)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<u>심의·결정</u>한다.</p> <p>1.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<삭 제></u></p> <p><u><삭 제></u></p>	<p>제5조(위원회의 기능)</p> <p>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<u>심의</u> 한다.</p> <p>1.~ 5.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(개정안과 같음)</p> <p>(개정안과 같음)</p>